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1022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육근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담당변호사 한광훈

변 론 종 결 2023. 8. 9.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6. 1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36,059,5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059,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1)

나. C의 처분행위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5.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E, C, F은 2020. 6. 15.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8. 피고 명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12. 7. 13.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G은행, 채권최고액 1억 1,4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3. 1. 23.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의 합계는 89,606,936원(= G은행 83,450,593원 + 소외 회사 6,156,343원)이었다.

다. C의 무자력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3) G은행에 대한 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약 1,800만 원의 채무, 원고 등에 대하여 원금만 3,9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I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무자력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5. 21. 당시의 가액은 2억 5,4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인바(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 무렵인 2020. 6.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5,4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 정도였던 사실,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무렵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는 91,731,981원(= G은행 83,450,593원 + 소외 회사 8,281,3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F과 소외 회사의 대리점계약 종료시까지의 증감변동하는 모든 외상거래로 인한 채권을 포괄하는 것이어서 그 액수는 대리점계약의 종료시점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최고액 전체가 시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성을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사해행위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하였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4)).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G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G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020. 5. 21. 및 2020. 6. 18.경에는 83,450,593원이었다가 2023. 3. 30.에는 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G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 준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5)

그리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최소한 2억 5,400만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분할협의 당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는 91,731,981원(= G은행 83,450,593원 + 소외 회사 8,281,388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억 5,400만 원에서 91,731,981원을 뺀 162,268,019원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36,059,559원(= 162,268,019원 × 2/9, 원 미만 버림)이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36,059,5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59,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횡스라브지붕 4층 공동주택

지하1층 150.33㎡, 1층 내지 3층 각 142.99㎡, 4층 132.2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 248.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66.0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48.9분의 28.164 끝.

(별지)

청 구 원 인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J 주식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C 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2015차전18275호), 위 법원은 2015. 7. 22. '위 C 은 원고에게 금 10,787,705원 및 그 중 금 10,200,26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7. 24. 위 C 에게 송달되어 2015. 8. 8.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지급명령 참조).

이후, 위 J (주)는 2020. 5. 20. 소외 K 유한회사에게 위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K (유)는 2019. 6. 20. 원고에게 위 C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과 관련하여, 위 C은 원고에게 금 25,274,868원 및 그 중 금 10,200,260원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C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2015차진47050호), 위 법원은 2015. 10. 19. '위 C은 원고에게 금 13,209,526원 및 그 중 금 12,204,430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0. 22. 위 C에게 송달되어 2015. 11. 6. 확정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과 관련하여, 위 C은 원고에게 금 25,814,792원 및 그 중 금 12,204,430원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5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및 (2) 각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인 금 51,089,660원입니다.

- 1) 다만, 8번째줄의 '2020. 5. 20.'은 '2016. 5. 20.'의 오타이다.
-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20. 5. 21.에 분할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협약이 이루어진 날은 2020. 6. 15.이고, 같은 날 작성된 분할협약서가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다.
- 3)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0952 판결).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적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4)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 5) 실제로 G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3. 1. 20. 말소되었다.